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20)**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금융(671202)	정기	1,300억원대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및 채권 등의 중개, 파생상품 거래 Text 및 중개, 기업의 인수 및 인수합병 자문업 등을 영위 중임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이전가격 (인바운드)	18003	국외 관계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장외 주식대량매매거래(Block Deal)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익분할시 공헌도 과소산정 으로 이전소득 과소수취
-	2	경영자문 수수료	18002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영자문료의 손금 불산입추가 용역제공이 없는 제3자 외부비용에 가산된 이익(Mark up)의 손금불산입
	3	기타과세	80101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원천세 과세

Text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이전가격(인바운드) (항목코드: 18003)

공동수행 주식 중개거래 등 관련 수익 과소수취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사실관계) 조사법인은 4개의 국외특수관계사와 M&A자문, 주식발행

Text (ECM, Equity Capital Market), 채권발행(DCM, Debit Capital

「ext Market)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련 수익을 공헌도에 따라 배분

Text - 국조법령 제9조【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Text 산출하고 관여한 회사들간에 공헌도를 산출하여 이익배분

Text ○ (착안사항) M&A자문, 주식발행(ECM, Equity Capital Market), 채

Text 권발행(DCM, Debit Capital Market) 거래에서 판매 또는 구매하고자

Text 하는 고객 중 한 곳이라도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사법인이 연락,

Text 의사소통, 실사, 거래성사를 위한 협상 등의 업무에서 관여하는 바가

Text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고객이 국내<u>가 아닌 거래건</u>과

Text 유사한 공헌도로 배부를 받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조사 실시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사전정보 수집 및 분석

Text ○ (온라인 검색) 일반적으로 자사의 영업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거래

Text 성사된 건을 기사화 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성사시킨

Text 거래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거래처, 매매대상업체(주식),

Text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거래내역 사전 확보

Text - 조사법인 제출한 내부자료의 신뢰성 검증과 공헌도 산출의 적정성

Text 검증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임

Text 거래구조 파악 일반적인 기업에서 수행하는 거래가 항 아닌 업무를 거래로서 거래를 성사시키 위해 어떠하 수행하고 발생할 Text 험의 무엇이며 명의 인적자원이 투입되는지 등에 대하 Text 사전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파악 ㅁ] 린

Text < 온라인 검색 수집자료 예시 >





Text 나. 관련자료 확보

Text 열 확보 동안 국외 관계사와 거래성사 내 조사대상기간 협력하여 Text 래어 대항 상세 정 爿

Text 분할의 검토를 위하여 거래종류 의 젘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이익분할을 위하 산출내역 Text 거래금액, 공동수행한 국외관계사, 특정 정보 확보

< 거래 내역 총괄표 >

(백만원)

Table	구분	거래건수	총 수취 수수료	조사법인 수취금액
	M&A 자문	0	00,000	00,000
	주식 발행(ECM)	0	00,000	00,000
	채권 발행(DCM)	00	00,000	00,000
	계		00,000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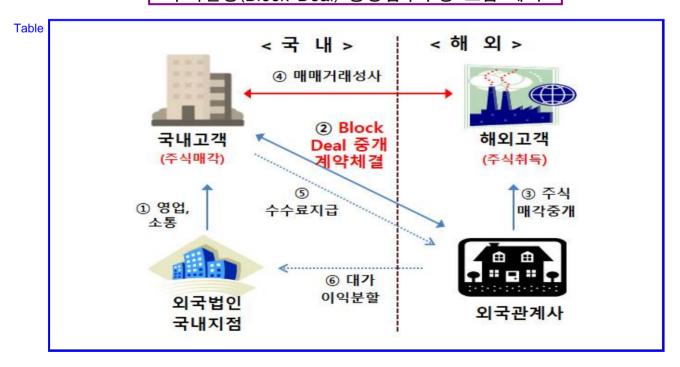
- (수행업무) 통상적으로 조사법인은 국내 고객사들이 진행할 신규

Text 거래를 유치하기 위한 RM(Relationship Manager) 조직을 운영하여

Text 고객사에 대한 거래정보를 수집 및 영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Text 있음을 확인

Text < 주식발행(Block Deal) 공동업무수행 흐름 예시 >



Text () (참여 인원 확인) 고객이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Text 하게 되면 거래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외 관계사와 전문가 팀

Text 을 구성하여 거래 성사를 위해 거래고객 발굴, 거래가격 산정,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팀별 참여 인원 자료 확보**

Text 다. 검토 및 결론

Text (관련분야의 명성있는 전문가 등)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Text 당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실제로 고객 영업 시

Text 이를 활용하고 있음

Text < 프로젝트가 완결되기까지 수행되는 대표적인 업무 구분 >

Table Table able 실 햇 업무수임 판매 등 (Origination) (Excution) ·거래 발생 정보수집 • 기업실사 ・고객유치 및 영업 ㆍ거래처 발굴 ㆍ계약서 작성 ㆍ제안서 작성 등 Tex ·거래가격 협상 ㆍ기타 후속작업 ㆍ거래대상물건 평가 •관련법 및 규제 검토 · 산업동향분석

Text - 상기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 고객사일 경우에는 거래를 수행할 때

Text 국내 직원들을 많이 포함하여 영업하고, 실제 거래 실행(Excution)

Text 시에도 국내 직원들이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

Text - (공헌도 과소 산정) 거래처가 국내업체인 프로젝트 중 조사법인이

Text 수임단계에서만 업무를 담당했다고 공헌도를 산출한 Block Deal

Text 1건*에 대하여는 조사법인의 공헌도 산출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

Text * "장외주식대량매매"로서 국내기업 ○○ ○○○가 홍콩에 상장되어있는
Text ○○○ ○○○○○ 주식지분 ○○○○등 ○○억달러(홍콩달러)에 매각하는 거래

Text (**(공헌도 재조정)** 공헌도 산출 시 각 수행업무별 가중치를 수임 Text 단계에 50%, 실행단계에 35%, 판매등 단계에 15%로 부여

Text - 이 중 조사법인은 실행단계에 참여하고 있는바, 참여한 인적 구성을 Text 기준으로 실행단계의 공헌도 중 50%를 추가 배분함으로써 당초

Text 수익의 배분율을 50%에서 67.5%로 상향 조정하여 이전소득 **과소**

Text <mark>수취액 ㅇㅇ억워을 적출함</mark>

Text < 공헌도 재조정 >

Table

구분		당초 공헌도	
업무	가중치	조사법인	관계사
수임	50	50	0
실행	35	0	35
판매 등	15	0	15
공헌도합	할계	50	50

Table

Э	조정 등	공헌도
	조사법인	관계사
	50	0
	17.5	17.5
	0	15
	67.5	32.5

Table

법령 국조법령 제9조 [이익분할방법]

-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
 -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 나. 영업자산, 유형 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Special

적출2

❖ 경영자문 수수료 (항목코드: 18002)

경영지원서비스 수수료 과다지급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사실관계) 조사법인의 모회사는 글로벌 관리 목적으로 미국·캐나다,

「ext 유럽, 아시아태평양(APAC), 라틴아메리카 네 개의 지역으로 구분

^{Text} 하여 지역별 관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함

Text - 조사법인은 상기 지역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하며, 아시아

^{Text} 태평양 지역은 지역관리 지원업무부서(RM, Regional Management,

Text 이하 "RM") 및 비즈니스 관련 지원업무부서(EQ, Equity Management,

Text 이하 "EQ")를 운영하여 소속 관계사를 관리

Text - 조사법인은 RM*과 EQ**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를 홍콩

Text 관계사에게 지급

Text * RM(Regional Management) 서비스

Text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사업 부문과 국가 전반에 걸쳐 전략 추진 및 거버넌스 조정 - 국가 간, 또는 사업 부문 간의 모든 이니셔티브를 담당, 지역 임원들과 협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통제 및

Text 비즈니스 관리를 시행

Text ** EQ(Equity Management) 서비스

Text - 비즈니스 계획과 전략을 공식화하도록 돕고,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제공 - 사업 부문, 국가 및 인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적으로 감독하는 Text 역할을 수행

Text ○ **(착안사항)** 국조령 제12조 제7항에서는 제공받은 용역거래가 손금

Text 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① 사전약정에 따라 용역이 실제

Text 제공되고. ②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Text 수 있고, ③ 동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Text 제3자가 동일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Text ④ 마지막으로 위 ①,②조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

Text 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조사 접근

Text - 또한 국조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Text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Text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Text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Text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Text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Text <mark>관련 내용 접근</mark>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질의 및 자료 요청

Text (기원서비스 내용 확인) 제공받는 서비스의 실체가 있는지와 실체가

Text (있는 경우 조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Text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서비스

Text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

Text < 지원서비스의 내용 예시 >

Table	번호	구분	내 용
	1	자산관리 고객을 위한 상품개발	서비스 수취자의 고객에게 자산 관리 솔루션 제공을 위한 상품의 설계, 개발 및 구조화와 관련하여 현지 관계사와 협력
	2	유동성관리 솔루션/자문	서비스 수취자의 고객에게 유동성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의 설계, 개발 및 구조화와 관련하여 현지 관계사와 협력
		1	:
	21	기업공통서비스	관계사를 위한 IT 및 IT지원서비스

Text () (해외 관계사 전표자료 요청)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한 Text 다음 용역의 실제성이 있는 것인지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배부 Text 기준은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배부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의 금액 산출 근거 자료로서 해외 관계사의 전표 내역까지 제출 요청

- Text (기 (부서 인터뷰) 각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서별 업무효익을 테스트하기 Text 위해 부서별 담당자와 서비스의 종류 및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Text 인터뷰 실시
- Text (온라인 자료 검색) 기업 광고 내역, 주요 임원들의 인사이동, 본점

 Text 등 관계사 애뉴얼 리포트 등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Text 확보하여 업무 관련성 검증

^{Text} 나. 검토 및 결론

- Text O (업무와 관련성 없는 비용 부인) 조사법인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Text 있어 국외 관계사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Text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임
- Text
 - 그러나 RM 및 EQ서비스 관련하여 제출된 세부 명세를 일일이 검토한

 Text
 결과, ① 특정 거래 관련 비용(Deal Related Expense), ②기타 운영비용

 Text
 (Other Operating Expense) 및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Expense) 등은

 Text
 조사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Text
 하지 못하고, 조사법인에서도 어떠한 효익을 받고 있는지를 소명하지

 Text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 Text * 국외관계사의 관련 부서, 인원, 수행업무 내용 등의 관련 자료
 - Text 이 (이익가산 배제) 국외 관계사가 청구한 비용 중에는 업무 관련성은

 Text 있으나, 제3의 업체가 국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외

 Text 관계사를 통해 지급하는 도관(Pass-through)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Text 있으며 동 비용에 대하여 10%의 이익을 가산 지급하고 있음
 - Text
 - 조사법인이 제공받은 서비스 세부내역 중 법률 및 전문서비스 비용

 Text
 (legal and professional expense), 광고 및 마케팅 비용(advertising &

 Text
 marketing expense) 등은 국외 관계사가 제3자로부터 받은 서비스를

 Text
 특별한 용역의 추가가 없이 단순히 조사법인에게 배부하는 도관

 Text
 (pass through)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익을 가산(Mark-up)할 항목이

 Text
 아니므로 10% Mark-up 손금불산입
 - Text **(결론)** '19~'23년 국외특수관계사에 지급한 지원서비스 수수료 중

Text 근거 없는 항목의 비용과 도관 성격 비용에 대한 마크업(10%) 비용

Text 등 oo억원 손금 부인

Table

집행기준 국조법 집행기준 제5-6의2-1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손금산입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

- ①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 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아래 용역은 상기 ①의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 ③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적출[3]

❖ 기타과세 (항목코드: 80101) 기술용역 소득 원천세 과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사실관계)** 조사법인의 최종 모법인은 그룹 내 계열사 간 광범위한

Text [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03년 인도에 IT 지원 회사인 ◇◇◇를

Text 설립하여 조사법인 및 각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운영지원, 애플리케

Text 이션 개발 및 테스트와 인프라 관련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ext 조사법인은 ◇◇◇로부터 제공받은 IT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

Text 원가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Text ○ (착안사항) 통상적으로 타국과의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소득

Text (기술용역 포함)에 대해서는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어 원천

Text 지국에서 과세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한 인도 조세조약에서는

Text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Text 있음을 착안하여 조사 착수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용역실질파악) 인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실질을

Text 파악하기 위해 인도 관계사 담당자와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프로

Text 젝트 실행자료 및 현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Text 제공받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Text - 금융상품 및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로서 조사법인의

Text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IT서비스임이 확인됨

Text 나. 검토 및 결론

- Text (기술용역 수수료 검토) 국조법시행령 12조【용역거래의정상가격산
 - Text 출방법】②항 1호에서는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 Text 성격의 용역(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 이익을
 - Text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이익을 가산하는 경우,
 - Text 특히 조사법인과 같이 20%의 이익을 가산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 Text 시행령 제132조 ⑥항 4호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 Text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Text (결론) 조사법인은 '19~'23년 원천징수 대상 기술용역 수수료 ㅇ억원에
 - Text 대해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바, 원천세 ㅇㅇ백만원(원천세율 3%)을
 - Text 적출함

Table

조세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 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 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 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생략)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특례]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 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